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358

발의일자: 2023. 5. 31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나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구청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6조). 라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

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- 마.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,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사.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, 다른 자치구 및 전문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 및 제5조 등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조 및 제3조 등

「건축물의 피난・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9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6. 1. ~ 6. 7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풍수해"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.
- 2. "침수 방지시설"이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주민의 책무) 주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

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.
- 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 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
 - 2.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
 - 3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
 - 4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구청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•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비용 지원)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9조(홍보 등)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, 다른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3. 1. 5.] [법률 제18685호, 2022. 1. 4., 타법개정]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
- 2.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 · 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
- 3.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· 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
- 4.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
- 5.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
- 6.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
- 7.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· 관리
- 7의2.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·시설 및 인력의 지정
- 8.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3. 4. 11.] [법률 제19331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3. "풍수해"(風水害)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"재난관리책임기관" 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- 가.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
- 나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·관리
- 다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- 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- 가. 삭제 <2017. 10. 24.>
- 나. 수방기준 제정 · 운영
- 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 · 운영
- 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 · 운영
- 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- 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
□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시행 2022. 4. 29.] [국토교통부령 제1123호, 2022. 4. 29., 일부개정]